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0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성일종·권성동·지성호

김영식 · 김기현 · 이명수

장제원 · 김선교 · 이태규

송언석 · 김태흠 · 이종배

의원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강화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현재 정부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춰 '제세공과 금 납부유예'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,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감면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또한, 국가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는 부재함.

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·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(안 제12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4(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조세의 감면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다음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  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 포장 구입 비용
  - 2. 제1호에 따른 용기·포장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배달한 경우 그 배달에 소요된 비용
  - ③ 제1항에 따른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제2

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12조의4(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) ①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조세의 감면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	현 행	개 정 안
호의 비용을 시원하여야 한다.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5호		제12조의4(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) ①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조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조세의 감면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<u>에 따른 용기·포장 구입 비</u> 용
- 2. 제1호에 따른 용기·포장을이용하여 내용물을 배달한 경우 그 배달에 소요된 비용
- ③ 제1항에 따른 조세의 납부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 심각 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범 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